제345회 임시회

운영상황결과보고

(2017. 7. 11 ~ 7. 25)

전라북도의회

(의사담당관실)

제345회 임시회

(2017. 7. 11 ~ 7. 25)

제345회 임시회 개회사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송하진 지사님과 김승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마와 무더운 날씨에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지난달 우리는 무주에서 열린 역사적인 2017세계태권도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했습니다. 참으로 가슴 벅찬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지구촌 183개국 1,800여명이 참가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 이 대회를 통해 우리는 태권도인들의 성지인 무주를 세계에 널리 알리고 전북의 가치를 한껏 드높였습니다. 국가적 대행사를 준비해온 우리 도민들 역시 큰 성취감과 함께 전북인으로서의 자긍심도 갖게 되었습니다. 이런 성취감과 자긍심 속에 우울한 소식도 있었습니다.

전북경제의 한 축을 담당해온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가 지난 1일 가동중단에 들어감으로써 관련 업계의 줄도산과 지역경제 침체가 현실화되지는 않을지 도민들이 노심초사하고 있습니다. 물론 해법을 찾기가 어렵고 힘들기는 하지만 그 어떤 경우에도 희망의 끈을 놓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집행부와 정부에서는 군산조선업계는 물론 인근 자영업자들이 당장 어렵고 힘든 시기를 이겨낼 수 있도록 각종 금융지원과 특별산업재해지역 지정 등 실질적이고 다양한 지원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도의회도 가동중단에 따른 여파를 최소화하고 조선소의 물량배정 등을 통해 군산조선소가 조속히 재가동될 수 있도록 열심히 지원하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지방자치가 부활한 지 22년이 되었습니다. 이제 지방자치는 누구도 거스를 수 없는 대세가 되었지만 아직도 반쪽짜리라는 평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대통령께서 직접 나서 지방분권형 개헌을 통한 국가개조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중앙과 지방이 공생하는 새로운 사회시스템을 만들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 사회가 공정한 선진사회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고난과 제도와 재정을 중앙정부가 독점하는 현재의 방식을 과감히 탈피해 중앙과 지방이 상호역할을 분담하는 협업체제를 구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우리 의회와 전라북도 그리고 도교육청은 지역경제 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지만 중앙집권체제의 제도적 한계에 부딪혀 뜻을

제대로 펴지 못한 경우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힘의 불균형문제는 지방정부와 의회 간에도 존재합니다. 현행 강 집행부 약 의회제상에서는 의회의 위상과 권한이 상당 부분 제약받는 상황으로 이에 대한 제도적 보완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도의회는 이번 기회에 지방분권뿐만 아니라 지방의회의 자율성과 독자성 확립을 위한 자치분권이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국시도의회와 함께 노력할 것입니다. 중앙과 지방 간 상생적 협력관계가 구축되고 반쪽짜리 지방자치도 바로세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전라북도, 도교육청 공직자 여러분과 도민들께서도 관심을 갖고 힘을 실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제 10대 도의회 임기도 1년가량 남았습니다. 지난 3년간 민생현장에서 밤낮없이 분투해 주신 의원님들 모두의 노고에 대해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소임을 마치는 그날까지 도민의 편에 서서 집행부와 소통하고 협치하여 풍요로운 전북을 만드는 데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달 초부터 장마가 시작되었습니다. 여름철 집중호우와 태풍 등에 대비한 철저한 예방대책을 세워 200만 도민들이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하절기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여러분 모두의 행복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7년 7월 11일

전라북도의회 의장 황 현

목 차

제345회 임시회

Ⅰ. 집회 및 의사일정

1. 공고 및 집회 ·····
2. 회기 및 운영 ·····
3. 의 사 일 정 ·····

Ⅱ. 의안접수 및 처리

1. 접 수 현 황 ·····
2. 처 리 현 황 ·····

Ⅲ. 민원 접수 및 처리

1. 접 수 현 황 ·····
2. 처 리 현 황 ·····
3. 위원회별 처리현황 ·····
4. 주요 처리사례 ·····

Ⅳ. 자료요구 및 제출현황

1. 2016년 자료요구 및 제출현황 ·····
2. 2016년 위원회별 요구상황 ·····
3. 제10대 의회 의원 요구 및 제출현황 ·····
4. 제10대 의회 위원회별 요구상황 ·····

Ⅰ. 집회 및 의사일정

1. 공고 및 집회

○ 집회 공고 : 2017. 7. 5(수)

○ 집회 일자 : 2017. 7. 11(화) 11:00

○ 집회 사유

- 2017년 하반기 실·국·원별 업무보고 청취
- 2017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 조례안 및 계류의안 등 안건 심의
- 상임위원회별 활동

2. 회기 및 운영(제10대)

○ 회　　기 : 2017. 11 ~ 7. 25(15일간, 2017년 : 68일, 총누계 484일)

○ 개의일수

- 본회의 : 2(연누계 : 18, 총 누계 94)
- 상임·특별위원

구 분	계	운 영	행정자치	환경복지	농산업 경 제	문화관광 건 설	교 육	특 별
제342회 임시회	27	2	4	4	5	5	4	3
2017 년도	106	9	19	17	16	17	16	12
총 누 계	801	56	165	114	126	135	147	58

3. 의사일정

○ 본회의

일 시	부 의 안 건	비 고
7. 11(화) 11:00	**《 제1차 본회의 》** ○ 개회식 ○ 5분 자유발언 - 장학수 의원, 최인정 의원, 정호영 의원, 국주영은 의원, 강용구 의원, 이상현 의원, 이현숙 의원 1. 제345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제345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 의원 선출의 건 3. 2017년도 전라북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4. 2017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5.새만금개발청, 국민연금관리공단, 기금운용본부, 농촌진흥청 기관장 전북출신 임명 건의안 6. 본회의 휴회의 건	
7. 25(화) 14:00	**《 제2차 본회의 》** ○ 5분 자유발언 - 최영규 의원, 최영일 의원, 송성환 의원, 양용호 의원, 장학수 의원, 최인정 의원, 정호영 의원, 최명철 의원 1. 긴급현안질문 2. 전라북도 시·군 경계조정 지원 조례안 3. 2017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4. 전라북도 명예도민증 수여 사전 동의안 5. 전라북도 부모교육 지원 조례안 6. 전라북도 생태관광 육성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전라북도 환경오염피해분쟁 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전라북도 삼락농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전라북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 전라북도교육청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 11. 전라북도교육청 학교협동조합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12.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전라북도교육청 무장애 돌봄교실 설치 및 지원 조례안 14. 2017년도 전라북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15. 2017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16. 위기의 군산지역경제, 산업위기 특별대응지역 지정 촉구 결의안 17. ‘동학농민혁명’ 정신 헌법 전문 포함 촉구 건의안 18. 지방교부세율 인상 촉구 건의안 19. 국립전북문화재연구소 설립 촉구 건의안	

○ 상임·특별위원회

위원회	일 시	차수	부 의 안 건	비고
운 영 위 원 회	7. 11(화) 10:00	1	○ 일반안건 심사의 건 - 제346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 결정의 건 - 전라북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7. 12(수) 10:00	2	○ 의회사무처 소관 2017년도 하반기 업무보고 ○ 의회사무처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	
행정자치 위 원 회	7. 12(수) 14:00	1	○ 하반기 업무보고 - 기획조정실, 전북연구원, 감사관	
	7. 13(목) 10:00	2	○ 하반기 업무보고 - 자치행정국, 인재육성재단, 인권센터, 공무원교육원 공보관 ○ 의안심사 - 전라북도 시·군 경계조정 지원 조례안 - 전라북도 명예도민증 수여 사전 동의안 - 2017년도 수신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	
	7. 14(금) 10:00	3	○ 하반기 업무보고 - 대외협력국, 자원봉사센터, 국제교류센터 ○ 현지의정활동 - 전북119안전체험관	
	7. 17(월) 10:00	4	○ 하반기 업무보고 - 소방본부 ○ 예산안 심사 - 소방본부, 기획조정실, 인권센터, 공무원교육원, 자치행정국, 대외협력국 ○ 예산안 계수조정	
환경복지 위 원 회	7. 12(수) 14:00	1	○ 하반기 업무보고 - 환경녹지국 ○ 의안심사 -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 전라북도 생태관광육성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전라북도 환경오염 피해분쟁 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13(목) 10:00	2	○ 현지의정활동 - 전라북도보건환경연구원, 전라북도남원의료원	

	7. 14(금) 10:00	3	○ 하반기 업무보고 - 전라북도 군산의료원, 복지여성보건국 ○ 예산안심사 - 복지여성보건국 ○ 의안삼사 -전라북도 부무교육 지원 조례안	
	7. 17(월) 10:00	4	○ 하반기 업무보고 - 새만금추진지원단 ○ 예산안심사 - 새만금추진지원단 ○ 하반기 업무보고 - 여성교육문화센터	
농산업경제 위 원 회	7. 11(화) 16:00	1	○ 현지의정활동 - 팜조아농업회사법인	
	7. 12(수) 14:00	2	○ 하반기 업무보고 - 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 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 - 자동차융합기술원	
	7. 13(목) 10:00	3	○ 하반기 업무보고 - 농업기술원, 전북신용보증재단, 에코융합섬유연구원 - 전북테크노파크	
	7. 14(금) 10:00	4	○ 하반기 업무보고 - 경제산업국 ○ 의안심사 - 전라북도 청소년 노동인권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 전라북도 감정노동자 보호 조례안 ○ 하반기 업무보고 - 농축수산식품국 ○ 의안심사 - 전라북도 삼락농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17(월) 10:00	5	○ 예산안심사 - 경제산업국, 농축수산식품국, 농업기술원 ○ 예산안 계수조정	
문화건설 안전위원회	7. 12(수) 14:00	1	○ 예산안심사 - 문화체육관광국, 건설교통국, 도민안전실	
	7. 13(목) 10:00	2	○ 현지의정활동 - 봉서지구 지방하천 정비공사	

	7. 14(금) 10:00	3	○ 하반기 업무보고 - 도민안전실 ○ 의안심사 - 전라북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하반기 업무보고 - 건설교통국, 전북개발공사, 전라북도 교통문화연수원	
	7. 17(월) 10:00	4	○ 하반기 업무보고 - 문화체육관광국 - 전라북도 체육회 - 전라북도장애인체육회 -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 예산안 계수조정 - 도민안전실 - 문화체육관광국 - 건설교통국	
	7. 18(화) 10:00	5	○ 하반기 업무보고 - 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 전라북도문화콘텐츠산업진흥원 - 한국소리문화의전당, 전주세계소리축제조직위 - 세계서예전북비엔날레조직위, 전라북도 문학관	
교 육 위 원 회	7. 12(수) 10:00	1	○ 예산안 심사 - 전라북도교육청, 교육지원청, 직속기관	
	7. 13(목) 10:00	2	○ 예산안 계수조정 ○ 의안심사 - 전라북도교육청 학교협동조합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 전라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전라북도교육청 무장애 돌봄교실 설치 및 지원 조례안 - 전라북도교육청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	
	7. 14(금) 10:00	3	○ 하반기 업무보고 - 전라북도교육청	
	7. 17(월) 10:00	4	○ 하반기 업무보고 - 12개 직속기관, 14개 교육지원청	
특 별 위 원 회 (예결위)	7. 19(수) 14:00	1	○ 전라북도 소관 추경 예산안 심사 ○ 전라북도 부서별 예산안 심사 - 의회사무처, 인권센터, 기획조정실 - 도민안전실, 대외협력국, 환경녹지국	
	7. 20(목) 10:00	2	○ 전라북도 부서별 예산안 심사 - 자치행정국, 농축수산식품국, 문화체육관광국, 건설교통국 - 복지여성보건국, 새만금추진지원단, 경제산업국, 소방본부 - 농업기술원, 공무원교육원, 보건환경연구원	

	7. 21(금) 10:00	3	○ 전라북도교육청 소관 추경 예산안 심사 ○ 전라북도교육청 부서별 예산안 심사 - 감사담당관, 행정국, 정책공보담당관, 교육국 - 직속기관, 지역교육지원청 ○ 전라북도 소관 수정예산안 심사 ○ 예산안 계수조정 및 심의의결	

Ⅱ. 의안접수 및 처리

1. 접수현황

○ 접수기관 및 의안별

제345회 (2017. 7. 25기준)

구 분			계	조 례				규칙	규정	승인 동의	일반 의안	예산 결산	건의 결의	기타 의안
				소계	제정	개정	폐지							
총 계	금 회		21	12	7	5		1				2	5	
	누 계		1098	613	280	328	11	13	1	250		39	134	48
의 회	소계	금회	13	7	6	1		1					5	
		누계	580	379	238	141		13	1	7			134	47
	의원	금회	13	7	6	1		1					5	
		누계	533	379	238	141		12		3			120	19
	위원회	금회												
		누계	47					1	1	4			14	27
도지사	금 회		6	4		5				1		1		
	누 계		387	181	131	143	7			184		21		1
교육감	금 회		2	1	1							1		
	누 계		131	53	5	44	4			59		18		1

2. 처리현황

○ 총 괄

제345회 (2017. 7. 25기준)

구 분			접 수	처 리	처 리 내 용						계 류 (미료, 미심사
					가 결			부결	폐기	철회	
					원안	수정	대안				
총 계		금회	21	19	15	4					3
		누계	1098	1072	904	138		16		14	26
조례안	소계	금회	12	10	8	2					2
		누계	613	598	470	110		3		6	24
	의회	금회	7	5	5						2
		누계	379	358	288	65				5	21
	도지사	금회	4	4	3	1					
		누계	181	179	137	39		2		1	2
	교육감	금회	1	1		1					
		누계	53	52	45	6		1			1
규 칙 안		금회	1								1
		누계	13	11	11					1	1
규 정 안		금회									
		누계	1	1	1						
승인동의안		금회	1	2	2						
		누계	250	249	227	7		10		5	1
일 반 의 안		금회									
		누계									
예산결산안		금회	2	2		2					
		누계	39	39	18	19		2			
건의결의안		금회	5	5	5						
		누계	134	133	130	1		1		1	1
기 타 의 안		금회									
		누계	48	48	48						

○ 위 원 회

구 분		회부									처리					미료	미심사
		계	조례	규칙	규정	승인동의	일반의안	예산결산	건의결의	기타의안	계	가결		부결	철회		
												원안	수정				
총계	금회	16	12	1		1		2			14	10	4			3	
	누계	928	610	13	1	241		38	17	3	902	749	121	16	13	26	
운영위원회	금회	1		1												1	
	누계	56	36	13	1				6		50	46	1	1	2	6	
행정자치위원회	금회	2	1			1					3	3					
	누계	182	132			38			2	1	180	157	21	2		2	
환경복지위원회	금회	3	3								3	2	1				
	누계	132	111			18			3		127	105	19	1	2	5	
농산업경제위원회	금회	3	3								1	1				2	
	누계	156	80			73			3		150	126	17	7	2	6	
문화관광건설위원회	금회	1	1								1	1					
	누계	163	103			56			4		161	126	25		3	2	
교육위원회	금회	4	4								4	3	1				
	누계	195	134			58		1		1	188	161	20	3	4	7	
특별위원회	금회	2						2			2		2				
	누계	40						38	1	1	40	20	18	2			

○ 본 회 의(직접부의)

구 분		부의									처리					미료	미상정
		계	조례	규칙	규정	승인동의	일반의안	예산결산	건의결의	기타의안	계	가결 원안	가결 수정	부결	철회		
총 계	금회	5							5		5	5					
	누계	170	1			7			120	42	170	167	2		1		

○ 본 회 의(의 결)

구 분		부의									처리					미료	미상정
		계	조례	규칙	규정	승인동의	일반의안	예산결산	건의결의	기타의안	계	가결 원안	가결 수정	부결	철회		
총 계	금회	21	12	1		1		2	5		19	15	4			3	
	누계	1098	613	13		250		39	134	48	1071	904	138		13	26	

제10대 의안처리 현황

○ 기관 및 의안별<접수>

제345회 (2017. 7. 25기준)

구 분		계	조 례				규칙	규정	승인동의	일반의안	예산결산	건의결의	기타의안
			소계	제정	개정	폐지							
총 계		1098	613	280	328	11	13	1	250		39	134	48
의 회	소 계	580	379	238	141		13	1	7			134	47
	의 원	533	379	238	141		12		3			120	19
	위 원 회	47					1	1	4			14	27
전라북도지사		387	181	131	143	7			184		21		1
전라북도교육감		131	53	5	44	4			59		18		1

○ 의안 및 처리유형별

제345회 (2017. 7. 25기준)

구 분		접 수	처 리	처 리 내 용						계 류
				가 결			부결	폐기	철회	
				원안	수정	대안				
총 계		1098	1071	902	138		16		14	26
조례안	소 계	613	598	470	110		3		6	23
	의 회	379	358	288	65				5	21
	도 지 사	181	179	137	39		2		1	1
	교 육 감	53	52	45	6		1			1
규 칙 안		13	11	11					1	1
규 정 안		1	1	1						
승 인 동 의 안		250	249	227	7		10		5	1
일 반 의 안										
예 산 결 산 안		39	39	18	19		2			
건 의 결 의 안		134	133	130	1		1		1	1
기 타 의 안		48	48	48						

의안번호	1045

2017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제 출 자	도지사		제 출 일 자	2017. 5. 30
위원회 심사	소관위원회	행정자치위원회	회 부 일 자	2017. 6. 1
	의 결 일 자	2017. 7. 13	심 사 결 과	원안가결
본회의 심의	회 차	제2차 본회의		
	의 결 일 자	2017. 7. 25	심 의 결 과	원안가결
이 송 일 자	2017. 7. 26		이 송 기 관	도지사
공 포 일 자			공 포 번 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2017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은「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같은 법 시행령」제7조 및「전라북도 공유재산관리조례」제12조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 취득 및 처분에 관한 관리계획임.

❍ 2017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2건으로
가. 전북테크비즈센터 신축 취득
나. 전라북도 노인회관 매입 취득

의안번호	1081

전라북도 부모교육 지원 조례안

제 출 자	정호윤 의원 외 8인		제 출 일 자	2017. 7. 3
위원회 심사	소관위원회	환경복지위원회	회 부 일 자	2017. 7. 5
	의 결 일 자	2017. 7. 14	심 사 결 과	원안가결
본회의 심의	회 차	제2차 본회의		
	의 결 일 자	2017. 7. 25	심 의 결 과	원안가결
이 송 일 자	2017. 7. 26		이 송 기 관	도지사
공 포 일 자			공 포 번 호	

□ 제안이유

❍ 이 조례는 부모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부모가 자녀에 대한 가정교육의 주체로서 올바른 역할을 실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 주요내용

가. 이 조례의 목적을 규정함(제1조)

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을 규정함(제2조)

다. 적용대상과 기본원칙을 규정함(제3조, 제4조)

라. 부모교육 내용 및 방법을 규정함(제6조)

사. 부모교육 추진 관련 예산지원 및 공적자에 대한 포상을 규정함(제7조,제8조)

의안번호	1082

전라북도 생태관광 육성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 출 자	도지사		제 출 일 자	2017. 7. 3
위원회 심사	소관위원회	환경복지위원회	회 부 일 자	2017. 7. 5
	의 결 일 자	2017. 7. 12	심 사 결 과	원안가결
본회의 심의	회 차	제2차 본회의		
	의 결 일 자	2017. 7. 25	심 의 결 과	원안가결
이 송 일 자	2017. 7. 26		이 송 기 관	도지사
공 포 일 자			공 포 번 호	

□ 제안이유

❍ 전국 최초로 생태관광 육성·지원 근거를 마련해 조성 중인 전라북도 생태관광지의 자연자산을 보전하고 성공적으로 정착되도록 하며 성공모델 조기 가시화를 위하여,

❍ 일률적인 균등 지원에서 유형별 차등 지원 방식으로 전환함에 따라 시·군별 생태관광지를 1개씩 모두 조성해야 한다는 오해가 없도록 사업명칭을 바꾸고 관련 조문을 변경하여 명문화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종전의 「1시·군 1생태관광지」 조문을 「전라북도 생태관광지」로 변경하여 전라북도 생태관광지 육성·지원 정책 개선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2조 및 제5조 및 제8조)

의안번호	1083

전라북도 삼락농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 출 자	도지사		제 출 일 자	2017. 7. 3
위원회 심사	소관위원회	농산업경제위원회	회 부 일 자	2017. 7. 5
	의 결 일 자	2017. 7. 14	심 사 결 과	원안가결
본회의 심의	회 차	제2차 본회의		
	의 결 일 자	2017. 7. 25	심 의 결 과	원안가결
이 송 일 자	2017. 7. 26		이 송 기 관	도지사
공 포 일 자			공 포 번 호	

□ 제안이유

❍ 현행 조례의 인용 법 개정, 여건 변화에 따른 미비점 등을 사전 보완하여 내실 있는 삼락농정위원회를 운영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현행 조례의 인용법 분법 및 개정(안 제2조 제1호·제2호·제3호, 제4조제1항)

나. 위촉직 위원의 연임 사항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 「전라북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따름(안 제4조제6항)

다. 삼락농정 포럼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민간 기관·단체 위탁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안 제10조제2항)

라. 사)전국쌀생산자협회 전북본부를 당연직 위원 단체로 추가(안 별표 1)

마. 도 조직개편 등에 따라 협업부서 당연직 위원 부서 조정(안 별표 2)

의안번호	1084

전라북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 출 자	도지사		제 출 일 자	2017. 7. 3
위원회 심사	소관위원회	문화건설안전위원회	회 부 일 자	2017. 7. 5
	의 결 일 자	2017. 7. 14	심 사 결 과	원안가결
본회의 심의	회 차	제2차 본회의		
	의 결 일 자	2017. 7. 25	심 의 결 과	원안가결
이 송 일 자	2017. 7. 26		이 송 기 관	도지사
공 포 일 자			공 포 번 호	

□ 제안이유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조례명 및 인용조문을 법령에 맞게 변경하고 법령의 개정내용을 반영하며 상위법령에 맞지 않는 내용을 정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조례 제명 변경
나. 간판의 총수량 완화
다. 전기사용 광고물 등의 허용기준 제시
라. 옥상간판 중 가림간판 허용기준 제시
마. 전광류 사용간판 또는 디지털 광고물 간판등의 표시기준 정함
바. 옥외광고사업자단체에 사업지원 근거 마련
사.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등에 관한 규정 신설

의안번호	1085

전라북도교육청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

제 출 자	교육감		제 출 일 자	2017. 7. 3
위원회 심사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회 부 일 자	2017. 7. 5
	의 결 일 자	2017. 7. 13	심 사 결 과	수정가결
본회의 심의	회 차	제2차 본회의		
	의 결 일 자	2017. 7. 25	심 의 결 과	수정가결
이 송 일 자	2017. 7. 26		이 송 기 관	교육감
공 포 일 자			공 포 번 호	

□ 제안이유

❍ 「성별영향분석평가법」 개정(2017. 6. 21. 시행)에 따라 시행 중인 조례와 규칙 그리고 소관 정책에 대하여 특정하여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실시할 수 있는 절차와 방법을 마련하기 위함임.

❍ 우리청 소속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 분석평가제도의 운영 및 개선 등을 심의·조정하고 이를 통해 전북교육정책을 수립하거나 시행하는 과정에서 성평등 실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임.

□ 주요내용

가.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 설치와 기능

나.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과 수당 규정

다.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의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사항

의안번호	1086

2017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 출 자	교육감		제 출 일 자	2017. 7. 3
위원회 심사	소관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 부 일 자	2017. 7. 5
	의 결 일 자	2017. 7. 21	심 사 결 과	수정가결
본회의 심의	회 차	제2차 본회의		
	의 결 일 자	2017. 7. 25	심 의 결 과	수정가결
이 송 일 자	2017. 7. 26		이 송 기 관	교육감
공 포 일 자			공 포 번 호	

□ 제안이유

❍ 2017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본예산 편성 이후 중앙정부이전수입 등 재원 변동에 따른 예산조정 및 필요한 재정 수요 등을 반영하기 위하여 2017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을 받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추가경정예산안 규모

- 세입 (단위: 천원)

구 분		추가경정예산액	기정예산액	증 감 액
합 계		3,083,998,872	2,861,846,968	222,151,904
	이 전 수 입	2,854,702,835	2,675,698,658	179,004,177
	자 체 수 입	33,662,075	31,572,346	2,089,729
	차 입	57,331,608	99,062,089	△41,730,481
	기 타	138,302,354	55,513,875	82,788,479

- 세출 (단위: 천원)

구 분		추가경정예산액	기정예산액	증 감 액
합 계		3,083,998,872	2,861,846,968	222,151,904
	유아및초중등교육	2,889,041,796	2,729,422,594	159,619,202
	평생·직업교육	7,149,678	6,920,456	229,222
	교 육 일 반	187,807,398	125,503,918	62,303,480

의안번호	1087

전라북도 시·군 경계조정 지원 조례안

제 출 자	허남주 의원 외 11인		제 출 일 자	2017. 7. 3
위원회 심사	소관위원회	행정자치위원회	회 부 일 자	2017. 7. 5
	의 결 일 자	2017. 7. 13	심 사 결 과	원안가결
본회의 심의	회 차	제2차 본회의		
	의 결 일 자	2017. 7. 25	심 의 결 과	원안가결
이 송 일 자	2017. 7. 26		이 송 기 관	도지사
공 포 일 자			공 포 번 호	

□ 제안이유

❍ 민선 지방자치제가 확립되기 이전에 중앙정부의 일방적 지침에 의해 자치단체 관할구역이 비효율적으로 구획된 측면이 있어 자치단체별 현실에 맞게 조정할 필요가 있음

❍ 차고지, 환경시설, 변전소 등 혐오시설을 시·군 관할구역의 경계에 집중 유치하여 다른 시·군과 갈등을 유발하거나 각종 개발사업 등으로 시·군 관할구역의 경계가 주민의 실제 생활권과 불일치하여 주민불편과 비효율적 행정을 초래하는 사례가 늘고 있음

❍ 도내 시·군의 경계조정에 대한 의견제시 및 협의권고 등을 하여 합리적 대안을 마련하도록 하고,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통해 관계 시·군 간 일치된 합의에 의한 경계조정을 유도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용어정의, 경계조정 기본원칙에 관한 사항규정(안 제1조 내지 제3조).

나. 경계조정 대상지 선정에 관한 사항 및 도지사의 경계조정 계획 수립 의무를 규정함(안 제4조)

다. 경계조정 대상지 선정 등을 위한 실태조사 의무를 규정함(안 제5조).

라. 도지사의 경계조정 의견제시 및 협의권고 사항과 절차를 규정함(안 제6조)

마. 주민갈등 해소 또는 행정 효율성 제고에 기여한 경계조정의 경우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

의안번호	1088

전라북도 명예도민증 수여 사전 동의안

제 출 자	도지사		제 출 일 자	2017. 7. 3
위원회 심사	소관위원회	행정자치위원회	회 부 일 자	2017. 7. 5
	의 결 일 자	2017. 7. 13	심 사 결 과	원안가결
본회의 심의	회 차	제2차 본회의		
	의 결 일 자	2017. 7. 25	심 의 결 과	원안가결
이 송 일 자	2017. 7. 26		이 송 기 관	도지사
공 포 일 자			공 포 번 호	

□ 제안이유

❍ 전라북도 발전에 공로가 기대되는 타 지역 인사를 대상으로 우리 道 발전에 폭넓은 협조 및 지원체계 구축하고자 전라북도 명예도민증을 수여하기 위해 의회 사전 동의를 받고자 함.

□ 주요내용

성명	소속 /직위	출신	주요경력	비고
배진환	지방행정 연수원장	강원 (평창)	○ 前 강원도 행정부지사	
김태환	전북지구 기무부대장	경북 (경주)	○ 前 국군기무사령부 210기무부대장	
박완주	천안시을 국회의원	충남 (천안)	○ 現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	

의안번호	1089

전라북도 환경오염피해분쟁 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 출 자	도지사		제 출 일 자	2017. 7. 3
위원회 심사	소관위원회	환경복지위원회	회 부 일 자	2017. 7. 5
	의 결 일 자	2017. 7. 12	심 사 결 과	수정가결
본회의 심의	회 차	제2차 본회의		
	의 결 일 자	2017. 7. 25	심 의 결 과	수정가결
이 송 일 자	2017. 7. 26		이 송 기 관	도지사
공 포 일 자			공 포 번 호	

□ 제안이유

❍ 『환경분쟁조정법』 개정으로 지방위원회의 구성인원 증가 및 환경분쟁 조정사무에 ‘중재(仲裁)’가 추가됨에 따라 우리도 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과 우리 도민의 환경분쟁을 신속·공정하게 해결하기 위해 조례 개정 추진

□ 주요내용

가. 위원회 구성인원 변경 : 전라북도 환경분쟁조정위원회를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개정(안 제2조)

나. 조정의 사무 추가에 따른 변경 : 『환경분쟁조정법』 제45조의2에 따른 중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중재위원회의 회의 소집, 수수료에 관한 사항을 추가(안 제4조·5조·8조)

의안번호	1090

2017년도 전라북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 출 자	도지사		제 출 일 자	2017. 7. 3
위원회 심사	소관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 부 일 자	2017. 7. 5
	의 결 일 자	2017. 7. 21	심 사 결 과	수정가결
본회의 심의	회 차	제2차 본회의		
	의 결 일 자	2017. 7. 25	심 의 결 과	수정가결
이 송 일 자	2017. 7. 26		이 송 기 관	도지사
공 포 일 자			공 포 번 호	

□ 제안이유

❍ 도정 핵심사업의 완성도 제고와 도민의 만족도가 높은 일자리 창출· 서민생활 안정 등을 지원하고자 2017년도 전라북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고 지방자치법 제130조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함.

□ 주요내용

가. 2017년도 전라북도 제1치 추가경정 예산안

(단위 : 천원)

구 분	세입·세출예산총액	기정예산액	증감액
합 계	5,453,656,358	5,158,524,783	295,131,575
일 반 회 계	4,973,335,781	4,691,638,607	281,697,174
특 별 회 계	480,320,577	466,886,176	13,434,401
기 타 특 별 회 계	480,320,577	466,886,176	13,434,401
농어촌주택사업	11,150,044	9,990,114	1,159,930
의 료 급 여 기 금	400,231,894	388,749,765	11,482,129
동 부 권	30,132,716	30,132,716	-
지 역 자 원 시 설	38,805,923	38,013,581	792,342

의안번호	1090-1

2017년도 전라북도 제1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제 출 자	도지사		제 출 일 자	2017. 7. 21
위원회 심사	소관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 부 일 자	2017. 7. 21
	의 결 일 자	2017. 7. 21	심 사 결 과	원안가결
본회의 심의	회 차	제2차 본회의		
	의 결 일 자	2017. 7. 25	심 의 결 과	원안가결
이 송 일 자	2017. 7. 26		이 송 기 관	도지사
공 포 일 자			공 포 번 호	

□ 제안이유

❍ 2017년도 전라북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중앙재원 변동 등 예산(안) 제출 이후 수정사유 발생으로 내용의 일부를 수정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제1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규모

(단위 : 천원)

구 분	세입·세출예산총액	기정예산액	증 감 액
합계	5,467,584,778	5,453,656,358	13,928,420
일반회계	4,987,264,201	4,973,335,781	13,928,420
특별회계	480,320,577	480,320,577	-
기타특별회계	480,320,577	480,320,577	-
농어촌주택사업	11,150,044	11,150,044	-
의료급여기금	400,231,894	400,231,894	-
동부권	30,132,716	30,132,716	-
지역자원시설	38,805,923	38,805,923	-

의안번호	1091

전라북도교육청 학교협동조합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제 출 자	양용모·이해숙 의원 외 6인		제 출 일 자	2017. 7. 3
위원회 심사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회 부 일 자	2017. 7. 5
	의 결 일 자	2017. 7. 13	심 사 결 과	원안가결
본회의 심의	회 차	제2차 본회의		
	의 결 일 자	2017. 7. 25	심 의 결 과	원안가결
이 송 일 자	2017. 7. 26		이 송 기 관	교육감
공 포 일 자			공 포 번 호	

□ 제안이유

❍ 전라북도에 소재하는 학교협동조합을 지원·육성하여 삶에 기반을 둔 실천적 경제교육을 구현하고, 공동체와 함께하는 민주시민교육 활성화를 목적으로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학교협동조합의 용어를 정의함(안 제2조)

나. 학교협동조합의 기반 조성과 활성화를 위하여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는 사항을 정함(안 제4조)

다.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학교협동조합에 대한 실태조사와 지원계획·시행계획을 수립하는 사항을 정함(안 제5조)

라. 학교협동조합 민관협의회 사항을 정함(안 제6조)

마. 학교협동조합의 기반 조성과 활성화를 위하여 지원하는 사항을 정함(안 제8조)

바. 학교협동조합의 입찰 참가 기회가 확대될 수 있는 사항을 정함(안 제9조)

의안번호	1092

전라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 출 자	양용모·이해숙 의원 외 6인		제 출 일 자	2017. 7. 3
위원회 심사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회 부 일 자	2017. 7. 5
	의 결 일 자	2017. 7. 13	심 사 결 과	원안가결
본회의 심의	회 차	제2차 본회의		
	의 결 일 자	2017. 7. 25	심 의 결 과	원안가결
이 송 일 자	2017. 7. 26		이 송 기 관	교육감
공 포 일 자			공 포 번 호	

□ 제안이유

❍ 학교협동조합이 공유재산을 사용할 수 있는 사항을 정함

□ 주요내용

가. 학교협동조합이 공유재산을 사용하는 사항을 정함

의안번호	1093

전라북도교육청 무장애 돌봄교실 설치 및 지원 조례안

제 출 자	최영규·최인정·이해숙 의원 외 11인		제 출 일 자	2017. 7. 3
위원회 심사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회 부 일 자	2017. 7. 5
	의 결 일 자	2017. 7. 13	심 사 결 과	원안가결
본회의 심의	회 차	제2차 본회의		
	의 결 일 자	2017. 7. 25	심 의 결 과	원안가결
이 송 일 자	2017. 7. 26		이 송 기 관	교육감
공 포 일 자			공 포 번 호	

□ 제안이유

❍ 도내 모든 학생들이 이용하거나 이동하는데 불편이 없는 생활환경을 갖춘 돌봄교실을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무장애 돌봄교실 조성을 위한 사항을 정함(안 제4조)

나. 무장애 돌봄교실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과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는 사항을 정함(안 제5조)

다. 무장애 돌봄교실 시설의 확충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을 정함(안 제7조)

라. 교육감은 무장애 돌봄교실 조성에 기여한 공로가 많은 개인, 단체 등을 시상할 수 있는 사항을 정함(안 제8조)

의안번호	1094

새만금개발청, 국민연금관리공단, 기금운용본부, 농촌진흥청 기관장 전북출신 임명 건의안

제 출 자	최인정 의원 외 10인		제 출 일 자	2017. 7. 10
위원회 심사	소관위원회	<직접부의>	회 부 일 자	
	의 결 일 자		심 사 결 과	
본회의 심의	회 차	제1차 본회의		
	의 결 일 자	2017. 7. 11	심 의 결 과	원안가결
이 송 일 자	2017. 7. 11		이 송 기 관	청와대등
공 포 일 자			공 포 번 호	

□ 제안이유

❍ 전라북도의회는 지역발전과 연계성이 높은 공공기관에 한해 적임자가 존재한다면 해당지역 출신을 최우선으로 고려할 것을 요구하는 건의안을 채택함.

□ 주요내용

가. 이들 공공기관 중 국민연금관리공단의 이사장과 국민연금관리공단 기금운용본부 본부장, 새만금개발청 청장을 전북출신으로 임명할 것을 건의한다.

나. 해당 기관의 책임 있는 운영은 물론이고 지역발전에 대한 강한 의지와 신념을 갖고 지역사회와 연계 강화, 지역주민의 신뢰획득 등의 기회로 삼을 수 있도록 문재인 정부는 적극 나서줄 것을 건의한다.

의안번호	1095

위기의 군산지역경제, 산업위기 특별대응지역 지정 촉구 결의안

제 출 자	최인정 의원		제 출 일 자	2017. 7. 24
위원회 심사	소관위원회	<직접부의>	회 부 일 자	
	의 결 일 자		심 사 결 과	
본회의 심의	회 차	제2차 본회의		
	의 결 일 자	2017. 7. 25	심 의 결 과	원안가결
이 송 일 자	2017. 7. 26		이 송 기 관	청와대등
공 포 일 자			공 포 번 호	

□ 제안이유

❍ 전라북도의회는 문재인정부가 제시한 군산조선소 대책과 관련하여 문제 해결의 핵심은 군산조선소 재가동에 있음에도 미봉책에 불과함에 대책으로 대응하는 것을 비판하고 실질적인 재가동 대책을 밝혀 줄 것을 촉구하며 결의안을 채택함.

□ 주요내용

가. 정부는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재가동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으로 선박펀드 1조 6천억을 군산조선소 물량으로 배정하고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밝힐 것을 촉구한다.

나. 정부는 군산과 같이 지역에서 발생하는 산업재난에 즉각 대응하고 지원할 수 있는 “(가칭)특별산업재난지역 제도”를 신설하고 현실성 있는 지역 경제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대책마련을 요구한다.

다. 현대중공업 주식의 9.3%를 소유한 국민연금관리공단이 공익점 관점에서 주주로서의 역할에 적극 나설 것을 요구하며 공정거래위원회 차원의 편법 경영권 승계 논란에 대한 조사를 촉구한다.

라. 현대중공업의 자세변화와 군산조선소 재가동을 통해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신뢰 회복을 촉구한다.

의안번호	1096

‘동학농민혁명’ 정신 헌법 전문 포함 촉구 건의안

제 출 자	김종철·장학수·정호영 의원 외 17인		제 출 일 자	2017. 7. 24
위원회 심사	소관위원회	<직접부의>	회 부 일 자	
	의 결 일 자		심 사 결 과	
본회의 심의	회 차	제2차 본회의		
	의 결 일 자	2017. 7. 25	심 의 결 과	원안가결
이 송 일 자	2017. 7. 26		이 송 기 관	청와대 등
공 포 일 자			공 포 번 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한반도 역사 속 최초의 민중혁명이자 집강소 설치를 통해 민주사회와 평등사회 실현을 시도했던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시작과 효시인 동학농민혁명의 가치와 의의 즉, 자유와 평등, 인권존중과 직접 민주주의 등 인류 보편적 가치를 추구한 동학농민혁명 정신을 개헌 시 대한민국 헌법 전문에 반드시 포함되기를 건의

의안번호	1097

지방교부세율 인상 촉구 건의안

제 출 자	이도영 의원 외 7인		제 출 일 자	2017. 7. 24
위원회 심사	소관위원회	<직접부의>	회 부 일 자	
	의 결 일 자		심 사 결 과	
본회의 심의	회 차	제2차 본회의		
	의 결 일 자	2017. 7. 25	심 의 결 과	원안가결
이 송 일 자	2017. 7. 26		이 송 기 관	청와대등
공 포 일 자			공 포 번 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지방교부세는 재정력이 낮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보전 기능과 지방자치단체 간의 수평적 재정불균등 조정기능을 수행할 목적으로 중앙정부가 국세 수입의 일부를 지자체에게 지급하는 재원임

❍ 현행 지방교부세의 재원은 2006년 내국세 총액의 19.24%로 정해진 이후 11년째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압박이 악화되고 있는 실정임

❍ 사회복지지출은 2009년 26조원에서 2016년 49.5조원으로 연평균 9.6% 증가한 반면, 지방예산은 2009년 137.5조원에서 2016년 184.6조원으로 연평균 4.3% 증가에 그침

❍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현행 19.24%의 지방교부세율을 23%까지 인상하는 법안을 조속히 마련해 줄 것을 촉구하여 지방재정의 안정을 도모하고자 함

의안번호	1098

국립전북문화재연구소 설립 촉구 건의안

제 출 자	강용구 의원 외 9인		제 출 일 자	2017. 7. 24
위원회 심사	소관위원회	<직접부의>	회 부 일 자	
	의 결 일 자		심 사 결 과	
본회의 심의	회 차	제2차 본회의		
	의 결 일 자	2017. 7. 25	심 의 결 과	원안가결
이 송 일 자	2017. 7. 26		이 송 기 관	청와대 등
공 포 일 자			공 포 번 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전라북도는 백제뿐 만 아니라 가야문화에 이르는 한반도 고대 역사의 새로운 전환점이 될 수 있는 다양한 고대문화유산을 보유하고 있는 곳임

❍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라북도에는 고증가치가 높은 도내 문화재에 대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연구기반이 없어 타 지역 문화재연구소의 손을 빌어야 하는 상황이 되풀이되고 있음

❍ 한편, 문화재청은 1990년 경북에 경주문화재연구소를 설립한 것을 시작으로 충남 부여 문화재연구소, 경남 창원 가야문화재연구소, 전남 나주문화재연구소, 충북 충주 중원문화재연구소, 경기도 강화문화재연구소를 설립해 국가차원에서 지역문화 연구·조사가 이뤄지고 있으며, 이는 지역문화발굴의 메카로 자리매김하고 있음

❍ 따라서 지역 불균형으로 인해 문화적 소외를 당하고 있는 전북 도민의 뜻을 모아 전북의 찬란한 문화유적이 국가차원에서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발굴·연구·조사할 수 있도록 국립전북문화재연구소를 조속히 설립할 것을 촉구하는 바임

Ⅲ. 민원 접수 및 처리

1. 접수현황

○ 분 야 별

(2017. 7. 9 ~ 2017. 7. 25)

구 분	계	행 정	교 육	사 회	보 건	환 경	산업 경제	체육 관광	농축 수산	교 통	도시 계획	건 설	건 축	기 타
금 회	2						1					1		
2017년 누 계	13	2	1				1	1	2	2	1	2		1

○ 제출자별

구 분	계	인 원 별					기관단체
		소 계	1인	2인~9인	10인~99인	100인 이상	
금 회	2	2		2			
2017년 누 계	13	13	9	2	2		

2. 처리현황

구 분	계	처 리 별					처리중
		소 계	처 리	불수리	취 하	타기관 이 송	
금 회	2	1	1				1
2017년 누 계	13	12	11			1	1

3. 위원회별 처리현황(제10대)

(2014. 7. 1 ~ 2017. 7. 25)

구 분	위 원 회 별	접 수	처 리 상 황				비 고
			계	처리	계류	반려	
전회까지	소 계	80	80	80			
	운 영 위 원 회						
	행정자치위원회	8	8	8			
	환경복지위원회	19	19	19			
	산업경제위원회	10	10	10			
	문화관광건설위원회	27	27	27			
	교 육 위 원 회	8	8	8			
	기 타	8	8	8			
금회	소 계	2	2	2			
	운 영 위 원 회						
	행정자치위원회						
	환경복지위원회						
	산업경제위원회	1	1	1			
	문화관광건설위원회	1	1		1		
	교 육 위 원 회						
	기 타						
누계	소 계	82	82	82			
	운 영 위 원 회						
	행정자치위원회	8	8	8			
	환경복지위원회	19	19	19			
	산업경제위원회	11	11	11			
	문화관광건설위원회	28	28	27	1		
	교 육 위 원 회	8	8	8			
	기 타	8	8	8			

Ⅳ. 자료요구 및 제출현황

1. 2017년 자료요구 및 제출현황(횟수별)

(2017. 7. 9 ~ 2017. 7. 25)

구 분 / 기관별		요 구	제 출	미제출	비 율(%)	비 고
계	금 회	28	28		100	
	누 계	306	306		100	
도	금 회	25	25		100	
	누 계	273	273		100	
교육청	금 회	3	3		100	
	누 계	33	33		100	

2. 2017년 위원회별 요구상황(횟수별)

(2017. 7. 9 ~ 2017. 7. 25)

구 분 / 기관별		계	운 영	행 정 자 치	환 경 복 지	산 업 경 제	문화관광 건 설	교 육	특 별
계	금 회	27	0	6	3	10	2	6	0
	누 계	305	0	76	52	57	44	72	4
도	금 회	24	0	6	3	10	2	3	0
	누 계	272	0	74	50	57	42	45	4
교육청	금 회	3	0	0	0	0	0	3	0
	누 계	33	0	2	2	0	2	27	0

3. 제10대 의회 의원 요구 및 제출현황(횟수별)

(2014. 7. 1 ~ 2017. 7. 25)

구 분	요 구	제 출	미제출	비 고
합 계	1983	1983		
전라북도	1503	1503		
교 육 청	480	480		

4. 제10대 의회 위원회별 요구상황(횟수별)

(2014. 7. 1 ~ 2017. 7. 25)

구 분	계	운 영	행정자치	환경복지	산업경제	문화관광건 설	교 육	특 별
합 계	1952	439	291	219	351	580	57	15
전라북도	1502	402	271	208	329	254	31	7
교 육 청	450	37	20	11	22	326	26	8

5. 제10대 의회 위원회별 요구상황(건수별)

(2014. 7. 1 ~ 2017. 7. 25)

구 분	계	운 영	행정자치	환경복지	산업경제	문화관광건 설	교 육	특 별
합 계	6922	1772	776	920	1020	1698	389	347
전라북도	5776	1678	731	886	942	1071	220	248
교 육 청	1146	94	45	34	78	627	169	99